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53

발의연월일: 2021. 3. 17.

발 의 자:서영석·고영인·최혜영

이규민 · 허종식 · 이용우

김주영 · 유정주 · 이용선

설 훈 · 윤준병 · 이해식

박홍근 · 김승원 · 홍정민

문진석 • 이용빈 • 정일영

김회재 · 김경만 · 황운하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고,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 남아 있음.

최근에는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여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을 고려한 아동권리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사회·국가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면서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 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200만원을 출생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대상·방법·시기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
	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
	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200만
	원을 출생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
	<u>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
	급 대상・방법・시기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